

도자기제조업체 근로자의 진폐증과 병발한 폐암(의증)

성별 남 나이 56세 직종 요업공 직업관련성 낮음

1 개 요

이 ○ ○ (56세, 남)는 1980년 1월부터 도자기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던 중 진폐증을 진 단받았고 1998년 3월에 18년 간 근무하였던 G요업을 정년퇴직 하였다. 2000년 5월 에는 호흡곤란과 함께 의식을 잃어 중환자실에서 폐렴과 폐암(의증)으로 진단받았다.

2 작업환경

G요업은 규석, 규사 등 실리카가 포함된 원료를 이용하여 위생도기를 제조하는 업 체이다. 이 ○ ○는 1980년 1월부터 1998년 3월까지 원료를 분쇄하는 일을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상당량의 유리규산이 포함된 분진에 노출되어 1997년에는 진폐증(장해 11급)으로 판정되어 보상받았다.

3 의학적 소견

퇴직 후 이직자 건강진단(건강관리수첩소지자 건강진단)대상이 되어 건강진단을 받 았으나 진폐증 이외에 별다른 이상소견이 없이 지내왔다. 2000년 4월부터 호흡곤란 이 심해지기 시작하였고 2000년 5월 24일에는 호흡곤란과 함께 의식을 잃어 K병원 에서 폐암을 진단받았다. K대학병원에서도 폐렴과 폐암의증으로 진단받고 C병원으 로 전원되어 치료받다가 회생곤란의 소견으로 퇴원하였다. 그러나, 퇴원 후 이유없이 호전되었다.

이 ° ° 의 흉부방사선 사진을 검토해 본 결과 5월 말의 K 대학병원 사진과 6월 말의 C병원 사진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어 좌폐의 종양 소견은 폐암이 아니라고 판단되었다. 흉부CT소견에서도 폐암의 소견은 없었다.

4 결 론

결론적으로 이 ° °의 폐암(의증)은 방사선 소견상 폐암이 의심되었지만 임상적으로 폐암이 아닌 것으로 확진되어 업무와는 무관하다고 판단되었다.